##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1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전종덕·이수진·신장식

이해민 · 송옥주 · 한창민

윤종오 · 정혜경 · 송재봉

임미애 · 민형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

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 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 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20년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을 "돌려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하는"을 "돌려받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 른 피해보전) ① -----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 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 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 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 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 | 의 발효일부터 10년 20년 간 시행한다. 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 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 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u>할</u> 수 있다.

- 1. ~ 3. (생 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다.

<u>받을</u> .
1. ~ 3. (현행과 같음)
2
<u>돌려받는</u>